

산학협력협약체결규정

제정 : 2004. 06. 16.

담당 : 산학협력단(02-950-5522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적용범위)	제3조(용어의 정의)	제4조(주관부서)
제5조(관련부서)	제6조(협약명칭)	제7조(협약신청)	제8조(협약승인)
제9조(실무사항)	제10조(제반경비)	제11조(협약당사자)	제12조(협약내용)
제13조(협약효력)	제14조(협약서)	제15조(시행세칙)	제16조(기록관리)
제17조(관련법령)	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교가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협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산업체 등”이라 함은 산업체, 연구소, 관공서 기타 협력이 필요한 모든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.
2. “산업체”라 함은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.
3. “연구소”라 함은 연구수행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4. “관공서”라 함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5. “기타기관”이라 함은 산업체, 연구소, 관공서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4조(주관부서) 산학협력협약체결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,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협약체결 실무절차
2. 협약관련 데이터 관리
3. 기타 협약관련 제반 업무

제5조(관련부서) 산학협력협약체결에 관한 관련부서는 해당 부서로 하며,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협약체결 추천

2. 협약체결 이행을 위한 업무 협조

제6조(협약명칭) ①본 대학교와 산업체간 또는 본교와 기타 기관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“산학협력협약”이라 한다.

②본교와 연구소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“연학협력협약”이라 한다.

③본교와 관공서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“관학협력협약”이라 한다.

④본교와 산업체 등의 협의에 의하여 협약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협약신청) 본교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산업체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협약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대학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8조(협약승인) 위 제7조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추천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며, 총장은 대학의 발전목표 및 대학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한다.

제9조(실무사항) 산학협력단장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제반 실무사항을 해당부서의 장과 함께 산업체 등과 협의한다.

제10조(제반경비)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, 공동사항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와 산업체 등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1조(협약당사자) 협약은 본 대학교 총장과 산업체 등의 대표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본교와 산업체 등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12조(협약내용) 협약내용은 공동연구, 위탁교육, 협동강의, 정보교환, 기자재 및 자료의 공동활용 등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되,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3조(협약효력) 협약은 본 대학교와 산업체 등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, 그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, 만기일 6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협약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14조(협약서) 협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,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6조(기록관리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「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」,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에 따른다.

제17조(관련법령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「학칙」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1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협약체결 신청서

협약구분		산학협력협약(), 연합협력협약(), 관학협력협약()				
기관 현황	공통기재 사 항	기관명		설립연월일		
		대표자성명		사업자등록번호		
		주 소	(우:)			
		연락처	TEL :	FAX:		
	선택기재 사 항	산학 협력	자산총액	원	자 본 금	원
			업태, 업종		종업원수	명
		연합 협력	예산규모	원	재정자립도	%
			연구인력	명	행정인력	명
		관학 협력	예산규모	원	재정자립도	원
			면적, 인구		행정인력	명
협력 가능사항						
협약 기대효과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 같이 귀 대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자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표자 성명 : (직인)</p> <p>한국성서대학교 총장 귀하</p>						
<p>※첨부서류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. 기관소개서 1부 3. 기증내역서 1부(해당하는 경우에만)</p>						

A4(210×297)

(08-10-**-** 승인)

(별지 제2호서식)

() 협 력 협 약 서

한국성서대학교와 ()은(는) 산학협동의 연계적인 발전과 미래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술인력의 양성·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약한다.

- 다 음 -

1. 한국성서대학교와 ()은(는)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향상을 위하여 상호지원 및 협력한다.
2. 한국성서대학교와 ()은(는)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.
 - .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활동
 - . 교수 및 학생의 현장 참여를 통한 산학협력 모델구축
 - . 위탁교육 및 협동강의를 통한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
 - . 기술정보의 교환
 - . 양 기관 소장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
 - . 양 기관의 실험분석기기 공동활용
 - . 기타 협력이 가능한 모든사항
3. 협의 사항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, 공동사항에 필요한 경비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4. 이 협약서는 한국성서대학교와 ()이(가)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,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단,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5.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한국성서대학교

(협약기관)

총장 (서명)

(직위)(서명)

A4(210×297)

(08-10-** 승인)